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8. 8. 구자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 8.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구자근의원)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순환 및 계절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으

로 인한 부채 발생, 폐업 등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
짐.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민병덕의원·송기현의원·오세
희의원·박지혜의원·구자근의원·박성민의원·박성훈의원·이철규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 폐기).